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개최 대담·토론회의 후보자
초청기준 중 여론조사 실시기관 변경 〉

■ 정춘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994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개최 대담·토론회의 후보자 초청기준 중 여 론조사 실시기관 변경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춘생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10. 29.
3. 회 부 일 : 2024. 10.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후보자간의 공개토론회를 통해 후보자에 대해 알리고, 공약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서울특별시 교육감선거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초청하는 후보자의 초청기준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이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부분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음.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후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주체가 언론기관이 아니어서 초청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토론회에 초청되지 못했기 때문임.

이에, 언론기관이 아닌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기반으로 후보자가 초청될 수 있도록 후보자 초청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2제4항제1호다목).

Ⅲ. 검토의견

1.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개최 대담·토론회의 후보자 초청기준 중 여론조사 실시기관 변경(안 제82조의2제4항제1호다목)

개정안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대담·토론회의 후보자 초청기준 중 여론조사 실시기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른 언론기관에서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① ~ ③ (생략)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④----- ----- ----- ----- ----- ----- -----.
1. 대통령선거	1. -----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u>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u>	다. <u>선거여론조사기관이</u> -----
<u>인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u>	----- ----- -----
<u>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u>	-----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 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 자 2.·3. (생 략) ⑤ ~ ⑭ (생 략)	----- ----- - 2.·3. (현행과 같음) ⑤ ~ ⑭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현행법 제82조의2에 따르면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 시·도지사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등을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함.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대담·토론회 개최 관련 비교>

선방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중앙	후보자 중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3회 이상 의무 개최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는 제외) 중에서 지정하는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2회 이상 의무 개최
선방위	시·도지사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시·도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1회 이상 의무 개최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는 제외) 중에서 지정하는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1회 이상 의무 개최
선방위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구·시·군	선거운동기간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의무 개최	

또한,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대통령 선거, 시·도지사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등을 위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하고 이 경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함.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대담·토론회 개최 시 후보자 조건>

구분	후보자 조건
대통령선거	1.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2.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1.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2.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지지를 얻은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지역구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1.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2.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3.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 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4. <u>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u> 선거기간 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	--

이와 관련하여 선거방송토론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언론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선거여론조사기관¹⁾(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기준 54개²⁾)에 여론조사를 의뢰하여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대담·토론회의 후보자를 초청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서울특별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초청기준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

1) 「공직선거법」

제8조의9(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등) ①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의2(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전화면접조사시스템 또는 전화자동응답조사시스템
2. 분석전문인력(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여론조사 기관·단체에서 여론조사의 실시·결과분석 등 여론조사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상근 직원
3. 여론조사 실시 실적 또는 매출액
 - 가. 여론조사 실시 실적 10회 이상. 다만, 등록신청일 현재 설립된 지 1년 미만인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경우에는 3회(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그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여론조사 실시 실적으로 한다.
 - 나.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여론조사 실시 매출액 5천만원 이상
4. 제3항제1호에 따른 조사시스템과 제3항제2호에 따른 상근 직원을 수용할 수 있는 사무소

2) 참고자료 참조

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충족하지 못하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에 초청되지 못한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³⁾

이에, 개정안은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의 후보자 초청기준 중 여론조사 실시기관을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⁴⁾이 정하는 바에 따른 언론기관”에서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선거권자의 알 권리 및 후보자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한층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 입법 시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언론기관이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뿐만 아니라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언론기관이 의뢰하는 여론조사 및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등 실제 선거여론조사

3) 선관위 주최 TV 토론 '조전혁'만 초청...정근식 "편파 토론", 뉴스1, 2024.10.04.

<https://www.news1.kr/society/education/5558265>

4)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언론기관의 범위) 법 제82조의2제4항에 따른 언론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공영방송사와 서울특별시의 안에 있는 지역방송사업자에 한한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가. 해당 선거구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나. 해당 선거구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

기관의 수가 변동되지 않음에도(기준을 갖추어 추가등록하는 경우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증가할 수 있으나 별론으로 함) 초청기준의 대상이 되는 여론조사의 수가 확대되기 때문에 현행보다 초청되는 후보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⁵⁾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여론조사 실시 주체>

	현행	개정안
여론조사 실시 주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u>언론기관이 의뢰한 선거여론조사기관</u>	<u>선거여론조사기관</u>

따라서, 개정안의 입법화를 고려할 경우 대담·토론회에 참석하는 후보자 증가에 따른 대담·토론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 9월 2일 기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언론기관은 전국적으로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89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 방송사업자 6개, 일반일간신문 사업자 340개로 밝힌 바 있음.

5) 현행법 제8조의9에 따라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반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기 때문에 개정안의 입법 시에도 실제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수는 변동이 없음. 참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은 등록대상이 아닌 관계로 그 규모는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음.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초청 후보자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균등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성은 공감하나, 유력 정당의 추천 여부, 공직선거에서의 지지도,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 선거권자의 관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3

[참고자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기관>

번호	조사기관명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1	(주)리서치디앤에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32 (여의도동)콤비빌딩 1211호	김기수
2	(주)알앤써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10길 18-4 (양재동)3층 303호	조병일
3	(주)조원씨앤아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9 (여의도동)805호 (삼보빌딩)	김대진
4	(주)코리아정보리서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62-10 (금남로5가)3층	김민수
5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70 (사직동)한국갤럽조사연구소	박재형
6	(주)리서치뷰	경기도 가평군 상면 임초밤안골로 69-109(임초리 125-11)	안일원
7	(주)리얼미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여의도동)805호~808호	이택수 김세훈
8	(주)리서치앤리서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303 (잠원동)SL빌딩	노규형
9	(주)케이스탯리서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4길 76 (서초동)월드빌딩	김지연
10	(주)모노커뮤니케이션즈 (모노리서치)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19(가산동)벽산디지털벨리6차 303호, 304호, 305호, 306호	이형수
11	(주)한국리서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79 (논현동)에이치타워	노익상
12	(주)코리아리서치 인터내셔널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18(서초동)석오빌딩 7층,8층	박준빈 조우철
13	(주)글로벌리서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9 (서초동)호서빌딩 3층 ~ 6층	김범주
14	케이에스오아이 주식회사(한국사회 여론연구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43 (양평동3가)1206호	권수정
15	(주)현대리서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56-1 (양재동)극동빌딩 2층, 3층	김용섭
16	(주)유니온리서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7길 16 (양평동4가)오오 1004빌딩 3층	최정택
17	(주)리서치랩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8길 16 (대치동)노벨빌딩 6층	도정화
18	(주)에스티아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23 (여의도동)정원빌딩 6층	이준호
19	(주)우리리서치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99 (독산동)시티렉스 701호	유봉환
20	(주)원지코리아컨설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29 (여의도동)정우빌딩 906호	허신학
21	(주)이너텍시스템즈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19 (가산동)501호	민수천
22	(주)유엔미리서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572 (성내동, 코오롱 2차 아파트)상가동 2층 213호(성내동, 코오롱2차아파트)	황현철
23	(주)디오피니언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13 (충무로3가)315호	이윤우
24	(주)에이스리서치	대구광역시 서구 달구벌대로 1691 (내당동)405호 (내당동, 엠프라자)	조재목
25	(주)티브릿지코퍼레이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가길 14 (여의도동)10층 (여의도동,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박해성

번호	조사기관명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26	(주)데일리리서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길 21 (양평동5가)612-1호	김종호
27	(주)에브리리서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여의도동)3층 313호	김종원
28	입소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63(중림동)5층, 6층	박황레 벤자민 페이지
29	(주)컨슈머인사이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29 (논현동)19층,(거평타운)	김진국
30	(주)리서치코리아	대구광역시 동구 국제보상로159길 41 (신천동, 우방푸른타운)4층	조미옥
31	(주)서던포스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107길 21 (잠원동)(잠원동, 대능빌딩 1층)	정우성
32	(주)아이소프트뱅크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진다리길 24	장덕진
33	여론조사공정(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09 (당산동)810호 (현대 뉴스타오피스텔)	송인숙
34	(주)에스티이노베이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재송동)501호	권민수
35	(주)비전코리아솔루션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여의도동)1326호 (엘지에클라트)	박용주
36	(주)메트릭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6길 11 (양재동)선우빌딩 3~5층, 7층 일부	나윤주 조일상
37	(주)서던포스트알앤씨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107길 21 (잠원동)4층	김소연
38	(주)엠브레인퍼블릭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9 (방배동)1층, 7층	이병일
39	코애드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48번길 44 (팔용동)506호(팔용동, 창원스마트업타워)	이철용
40	(주)케이스탯컨설팅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4길 77 (서초동)2층(서초동, 상원빌딩)	박승열
41	(주)한길리서치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99 (가산동)403호	마현애
42	(주)미디어리서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여의도동)620호	김대은
43	넥스트리서치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68 (관훈동)동덕빌딩, 7층	강승용
44	주식회사 데이터프링코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15(무교동)1202호	김세희
45	주식회사 미디어토마토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4길 32(합정동)4층 401호	정광섭
46	(주)케이오파일에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73 (가산동)에이스비즈포레 701호	현경보
47	(주)경남통계리서치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275번길 43(사림동)(주)경남통계리서치	하종훈
48	(주)리서치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당산동4가)2층 (226~227호)	김지숙
49	(주)메타서치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38(둔산동)주은오피스텔 1806호	최정규 최진
50	여론조사꽃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0(충정로3가)3층	김어준
51	메타보이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23 (여의도동)정원빌딩 401호	박건영
52	(주)피앰아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91길 16 (잠원동)B1,2~5,7층	이창재 조민희
53	(주)리서치민	대구광역시 서구 북비산로 389-1 (비산동)3층	김육 남용모
54	한국정책연구원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19-1 (남동)6층 601호	탁영환

※2025. 1. 22. 기준